

본 자료는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4조 제2항의 4(학생자치법정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: 학생부 상호간, 학생회와 학생부 상호간, 교사와 학생회 및 학생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)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## 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

---

학생회 회칙 제40조 제1항(소속)

- 모든 학생부서는 본 회에 소속된다.

학생회 회칙 제71조 제1항(소속)

- 모든 특별부서는 본 회에 소속된다.

**학생회 회칙 제19조 제2항(책임의 의무)**

- 학생부서의 본 회칙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학생부서장이 학생자치법정의 징계 대상이 된다.

학생회 회칙 제20조 제1항(회칙 수호의 의무)

- 학생부서장은 소속학생부서 내부에 있어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.

**학생회 회칙 제26조 제2항(조직 구성의 권리)**

- 각 학생부서의 학생부서장은 학생회장단에게 조직 구성의 일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.

학생회 회칙 제26조 제5항(조직 구성의 권리)

- 학생부서장의 조직구성에 대해 학생회장단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.

학생회 회칙 제59조 제1항(학생자치법정의 결정)

- 학생자치법정의 결정은 학생회원을 구속한다.

학생회 회칙 제69조 제2항(학생부서장 해임 절차)

- 학생부서장 해임의 사유는 이러하다
  - 1) 학생부서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
  - 2)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학생회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
  - 3) 학생회장단이 판단하기에 학생회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
  - 4) 독단적인 행동으로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혼란을 야기했을 경우

**학생회 회칙 제69조 제3항(학생부서장 해임 절차)**

- 학생부서장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.

학생회 회칙 제85조 제1항(특별부서장의 해임)

- 특별부서장의 해임은 규정에 따라 전교회장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해임에 관하여 학생자치법정은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.

작성일: 2022-09-07